

# 하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79
----------	------

발의연월일 : 2025년 10월 일

발의자 : 박선미 의원

### 1. 제안이유

- 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근거가 마련됨(2019. 12. 3. 신설)에 따라 조례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의 근거조문을 반영함.
- 나. 화재의 예방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춰 ‘재난취약계층’에서 ‘안전취약계층’으로 수정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며 행정현장에서의 용어혼동을 방지함.
- 다. 재난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추가·확대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하남시민의 안전을 폭넓게 보장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명을 「하남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로 변경
- 나.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 다.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라.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안 제4조~안 제5조)
- 마.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안 제6조~안 제7조)
- 바. 지원시설의 유지관리(안 제8조)
- 사. 사무의 위탁, 홍보(안 제9조~안 제10조)

###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덧붙임

나.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다.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라. 기타사항 : 해당없음

## 하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하남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미리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하남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3세 미만의 어린이
2. 65세 이상의 노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6.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7.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8. 그 밖에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거주 유형, 소득기준, 주택 형태 등의 선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 제4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소방·가스·전기 등의 안전점검 및 시설 개선
2. 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3.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4.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마스크 등의 용품
5. 반지하 주택 등에 각종 재난 발생 시 쉽게 대피할 수 있는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의 설치

6. 그 밖에 시장이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동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는 지원대상자 본인이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친족이나 거주지의 통장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서 제출이 없더라도 안전점검 등을 긴급히 실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7조(지원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자산상황, 건강상태, 현장실태 등을 조사하고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할 동장 및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신청인, 임대인 등의 동의를 얻어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시설의 유지관리) 제5조에 따라 각종 시설 설치 등 지원을 받은 지원대상자는 그 시설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 가스, 전기 등 관련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는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홍보) 시장은 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SNS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 조례에 따른 안전 환경 지원의 내용 및 절차 등을 적극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하남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하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하남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자는 제6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별지]

## 하남시 안전취약계층 지원신청서(제6조 관련)

지원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세대원수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신청인과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본인 <input type="checkbox"/> 친족(관계 :    ) <input type="checkbox"/> 기타관계인(    )	
	대상자 구분	<input type="checkbox"/> 13세 미만의 어린이 <input type="checkbox"/> 수급자 <input type="checkbox"/> 다문화가족 <input type="checkbox"/> 청소년 가장 <input type="checkbox"/> 기 타	<input type="checkbox"/> 65세 이상의 노인 <input type="checkbox"/> 차상위계층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input type="checkbox"/> 소방 시설 안전 점검	<input type="checkbox"/> 가스 안전 점검
	<input type="checkbox"/> 전기 안전 점검	<input type="checkbox"/>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 환경 개선
	<input type="checkbox"/> 재난 및 사고 예방 안전장비 및 용품	<input type="checkbox"/> 마스크(대기오염으로부터 보호 목적)
	<input type="checkbox"/> 반 지하 주택 등 안전시설 설치	<input type="checkbox"/> 기 타 (    )

「하남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하남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가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 처리담당자가 위의 구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 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하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 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하남 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7. 그 밖에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자동차단기 설치 및 노후설비 정비
2. 전기설비 안전점검 및 누전차단기 등 노후설비 정비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재난예방시설 지원신청서(이하“지원신청서”라 한다)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취약계층 본인이 지원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취약계층의 친족이나 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5조(지원결정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지원대상자 중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재난예방시설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사업 협조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전기·가스·소방 등에 대하여 전문성 있는 점검기관이나 업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해서 관할 소방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예산 확보) 시장은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지]

## 재난예방시설 지원신청서

지원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세대원수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대상자 구분	<input type="checkbox"/> 수급자 <input type="checkbox"/> 차상위계층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다문화가족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 <input type="checkbox"/> 청소년 가장 <input type="checkbox"/> 65세 이상 노인  세대 <input type="checkbox"/> 기 타

지원시설	<input type="checkbox"/> 전기 <input type="checkbox"/> 가스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하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장 귀하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구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관련법령 발췌서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25. 7. 8.] [법률 제20653호, 2025. 1. 7.,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9의2. (생략)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10. ~13. (생략)

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①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이 원활히 수행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2. 3.]

###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 8. 28.] [법률 제35620호, 2025. 7. 1., 일부개정]

제39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으로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3세 미만의 어린이

2. 65세 이상의 노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그 밖에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소방·가스·전기 등의 안전점검 및 시설 개선
2. 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3.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4.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6. 2.][중전 제39조의2는 제39조의3으로 이동 <2020. 6. 2.>]